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프론티어학술상 시상 규정

제정 2005년 5월 2일

개정 2012년 10월 15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으로 우수한 논문(원저)을 발표한 연구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시상대상자는 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① 입회일 기준으로 회원경력이 3년 이상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 ② 박사학위 취득한 지 10년 이내인 회원

제3조 (수상 후보자의 선정과 추천)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프론티어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회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아래 각 항의 활동을 한다.

-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심사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중 우수논문 2편을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우수논문 1편을 선정하여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수상대상자로 회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확정한다.

제6조 (시상) 결정된 수상자는 해당연도 가을학술대회 석상에서 회장이 프론티어학술상으로 상패와 부상을 시상한다.

제7조 (부칙)

-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